

07321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(여의도동) 하나증권 빌딩 15층
하나자산운용



운용지원 : 제2024-106호

2024. 06. 24.

수 신 : 수신처 참조

참 조 : 상품기획관련 담당 부서장

제 목 : 소규모펀드 공시안내

귀사(행)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당사에서 운용하는 소규모펀드의 수시공시대상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
-- 아 래 --

1. 관련근거 :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
(수시공시의 방법 등) 제3항
2. 적용 대상 :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추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설정 이
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, 설
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
만인 경우
3. 대상펀드명 :
(모) 하나글로벌통신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[주식혼합-재간접형]
(자) 하나행복한TDF2025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-재간접형]
(자) 하나행복한TDF2030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-재간접형]
(자) 하나행복한TDF2035증권자투자신탁[주식혼합-재간접형]
(자) 하나행복한TDF2040증권자투자신탁[주식혼합-재간접형]
(자) 하나행복한TDF2045증권자투자신탁[주식혼합-재간접형]
(자) 하나행복한TDF2050증권자투자신탁[주식혼합-재간접형]
(자) 하나코어셀렉션증권자투자신탁[주식혼합-재간접형]
(자) 하나글로벌통신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[주식혼합-재간접형]
(자) 하나인Best연금글로벌통신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[주식혼합-재간접형]
4. 처리 방법 : 수시공시
5. 발생일자 : 2024년 6월 21일
6. 공 시 일 : 2024년 6월 24일
7. 기 타 : 해당 펀드 중 투자신탁은 소규모펀드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
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(투자신탁의 해지)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
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할 수 있음

첨 부 : 소규모펀드 수시공시 대상 목록 1부.

하나자산운용(주)
대표이사 김 태 우

수신처 : 하나은행, 하나증권, 한화생명보험, 한국포스증권